

민들레요양원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목 적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2. 계약기간

- 1)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2)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3)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(단,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4)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본인부담금 감경, 비급여비용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- 5)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6)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 -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-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 - ③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3. 입 소 · 이용료 납부

- 1) 이용자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 납부하기로 한다.)
- 2)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3) 이용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.
- 4)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.
- 5) 개인사정으로 외박 시 식재료비는 부과하지 않으며(외출 및 복귀일 제외),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하되, 1회당 최대 10일(1개월에 15일)까지 산정할 수 있다.
(단, 오전에 복귀하는 경우 100% 산정)

구 분			1등급	2등급	3~5등급
요 양 급 여	노인전문 요양시설 (구 노인복지법)	입소자 2.1명당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	90,450	83,910	79,240
	노인요양시설 (개정법)	입소자 2.3명당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	86,030	79,810	75,360
비 급 여	식재료비 (1식)		3,800 원		
	간식비 (1식)		1,500 원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※ 시설의 입소자 수와 요양보호사의 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〈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) 〉

구분	시설급여
일 반	20 %
기타 의료수급권자	8 %
기초 수급권자	0 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 소 득 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12 % , 8 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

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(이하 “보험료액”이라 한다)

◇ 세부내역(한 달 기준) - 2025년 1월 1일 기준

시 설 급 여 본 인 부 담 금						
등급	1일 수가	일자	총금액	본인부담금 (일반20%)	본인부담금 (경감12%)	본인부담금 (경감8%)
1등급	90,450	30일	2,713,500	542,700	325,620	217,080
		31일	2,803,950	560,790	336,470	224,320
2등급	83,910	30일	2,517,300	503,460	302,080	201,380
		31일	2,601,210	520,240	312,150	208,100
3~5등급	79,240	30일	2,377,200	475,440	285,260	190,180
		31일	2,456,440	491,290	294,770	196,520
본 인 부 담 금 총 액						
일자	등 급	식대+간식비+기타		본인부담금 (일반20%)	본인부담금 (경감12%)	본인부담금 (경감8%)
30일	1 등급	345,000		887,700	670,620	562,080
	2 등급			848,460	647,080	546,380
	3~5등급			820,440	630,260	535,180
31일	1 등급	356,500		917,290	692,970	580,820
	2 등급			876,740	668,650	564,600
	3~5등급			847,790	651,270	553,020

※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2.1 기준 ※

비 급 여 (식대 + 간식비)				
일자	내역	단가*1일 횟수	금액	총액
30일	식 비	3,800 * 3	342,000	387,000원
	간식비	1,500 * 1	45,000	
31일	식 비	3,800 * 3	353,400	399,900원
	간식비	1,500 * 1	46,500	

〈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〉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에 따른 추가비용, 이.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**식사재료비**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**이.미용비**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.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.

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.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(3) **등급외자** : 해당연도의 시설급여와 비급여(식대+간식비)에 준하여 책정한다.

2. **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**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③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⑤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⑨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⑩ [소득세법]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할 권리
- ⑪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할 권리
- ⑫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 할 권리
- 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할 권리

2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-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-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

5. 계약의 해제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-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- 6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7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